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9. 26.(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9. 9.
- 회부일 : 2019. 9. 10. (의안번호 : 19 - 106)

2.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
 - 당초 2019. 12. 31. → 변경 2024. 12. 31.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추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항(심의회 심의 사항)의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항, 제3항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됨에 따라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12월 31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항(심의회 심의 사항)의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목적은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 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최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싱크홀(도로함몰)의 방치는 차량의 파손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홍보와 체계적인 제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